

2022년 10월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히 접종합시다



접종 대상

전국의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

접종 시기

2022년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

접종 백신

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(O+A형)

소 소규모농가(50두 미만)와 염소 농가는 시·군에서 일괄 공급하며,
소 전업농가(50두 이상)는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

☞ 소 소규모와 염소 농가는 보조 100%, 소 전업농가는 보조 50%

접종 방법

소규모농가(소 5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) → 수의사 등을 통한 접종 지원

전업농가(소 50두 이상, 염소 300두 이상) → 자가접종

☞ 백신 접종 후 지자체 또는 지역축협 등에 반드시 접종 신고

접종 전·후
철저한 방역 관리로
구제역을
방지합시다

접종 전

백신 접종반은
농장 출입 시 방역복, 마스크,
방역덧신 및 장갑 등을
착용하고 1농장/1회
사용원칙 준수 철저

접종 시

백신 접종요령 준수,
접종 부위가 오염되지
않도록 주의



접종 후

접종인력·차량 및
접종에 사용한 물품
세척·소독 철저



사후 관리

☞ 일제 접종 4주 내 백신 항체 양성을 모니터링 검사 실시

☞ 모니터링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(소 80%, 염소 60%) 미만
농가는 과태료 부과, 재접종 명령 및 1개월 내 재검사 조치

구제역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십시오



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십시오.

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농가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합니다.
-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발생농장은 **보상금 전액을 감액**합니다.
- * 신고 지연,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준수사항 불이행 시에도 보상금이 감액됩니다.

가축을 거래할 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
- (돼지·염소)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, (소·종돈)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
- *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송아지, 자돈, 어린 염소를 거래하려는 소유자 등은 어미 소, 모돈, 어미 염소의 '이전 예방접종일' 을 기록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구매자들에게 인계 또는 휴대하도록 합니다.

농장 내부와 외부를 매일 소독하고, 외부인·출입차량 통제·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.

- 일반인은 국내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고, 축산관계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한 국가의 가축 사육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.
- *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철저
- *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 및 가축전염병 해외 발생 현황 등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(<https://www.qia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방역수칙, 예방접종 요령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.

의심 가축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십시오

구제역·조류인플루엔자·
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가축은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검역본부

1588-9060

지방자치단체

1588-4060